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. 12. 13 선고 2018가단116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, 공익법무관 김태영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2. 6.

판결 선고 2018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1. 1. 22. 접수 제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. 5. 3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조영기

별지